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정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595

발의연월일: 2021. 9. 15.

발 의 자 : 홍정민 · 김민석 · 민형배

변재일 · 신정훈 · 유정주

김정호 · 김승남 · 강선우

이용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고, 보호 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 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,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18세는 너무 어려서 자립하는데 어려운 현실이고,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시 전문적인 심리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'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이하인 사람'에 대한 보호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하고, 보호 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15조 및 제16조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후단 중 "심리검사"를 "심리검사(경계선 지적 지능 검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18세"를 "24세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자립능력이 부족하고 보호자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연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보호조치) ①・② (생	제15조(보호조치) ①・② (현행과
략)	같음)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	③
수・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	
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	
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	
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	
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	
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	
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	
대상아동에 대한 상담, 건강검	
진, <u>심리검사</u> 및 가정환경에 대	심리검사(경계선 지적 지능 검
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	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
	<u>같다)</u>
	.
④ ~ ① (생 략)	④ ~ ①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	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
등)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	등) ①
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	
호대상아동의 연령이 <u>18세</u> 에	<u>24세</u>
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	
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·	
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	

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 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 다.

② ~ ④ (생 략) <신 설>

⑤ (생략)

-	_	_	_	-	 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-	_	_	_
-	_	_	_	-	 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자립 능력이 부족하고 보호자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연계할 수 있다.